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 자유무역 증진과 다자협력 강화 지지 결의안

검 토 보 고

■ 김준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04호)

2025. 9.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제안 및 회부	1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검토의견	5
※ 참고자료	8
1. 美 관세 부과 현황	8
2. 주요국 상호관세율 비교	9

I. 제안 및 회부

1. 제안자 : 김준형의원 등 16인

2. 제안일자 : 2025년 2월 20일

3. 회부일자 : 2025년 2월 21일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일방적인 무역 장벽 강화, 자원 이기주의와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세계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글로벌 경제협력 질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자유무역 질서를 선도해 왔고, 규칙에 기초한 국제 경제 질서를 구축해 왔다. 특히,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무역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이제는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로 당당하게 자리 잡았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상대로 한 관세전쟁을 선포하며, 스스로 구축한 자유무역 질서를 뒤엎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

세워 동맹국을 포함한 상대국들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경제 보복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지구적 차원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저해하고, 다자주의적 자유무역 체제를 약화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경제적 불확실성 심화는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과 삶에 커다란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합심하여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룬 세계 유일의 국가이며, 이러한 성공은 비교적 공정한 시장경제와 자유로운 국제 무역체제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세계 경제의 번영과 상호작용하며 발전해 왔으며, 특히 수출은 한국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기에 자유무역 체제의 후퇴는 그 어떤 나라보다 대한민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자유무역 체제를 보호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무역 질서를 증진하며, 한국 경제의 발전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자유무역 체제 구축과 보호를 위해 미국과 우방국들이 기울여온 노력과 협력에 경의를 표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무역 원칙이 한국경제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하며, 자유무역협정

(FTA) 및 다자무역체제(WTO, RCEP 등)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유무역을 촉진하며, 글로벌 경제 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을 결의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무역 질서를 강력히 지지하며, 특정 국가의 일방적인 무역 조치가 국민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부가 미국, EU, 일본, 중국, 아세안 등 주요 경제 강국들과 협력하여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다자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미·중 간 무역 갈등을 비롯한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우리 경제, 국민, 그리고 해외 진출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깊이 우려하며, 정부가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무역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외교·통상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자유무역은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과 번영의 핵심 요소이며, 개방적이고 공정한 자유무역 질서의 유지·확대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규칙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보호무역 조치 강화 가능성이 커졌으며, 특히,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동맹국까지 예외 없이 일방적인 관세 부과 대상으로 삼겠다고 발표하는 등 국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사정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으며,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무역 질서의 변화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 결의안을 제안함.

Ⅲ. 검토의견

결의안 제안 당시는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자동차·철강 등 핵심 수출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 조치 가능성이 확대되던 시기¹⁾였음.

동 결의안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무역 질서의 변화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며, 효과적인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²⁾하여 7월 30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었음. 주요 내용³⁾은 ① 한국에 대한 국별·자동차 관세 15% 인하, ② 반도체·의약품 등 232조 조사 품목에 최혜국대우 적용, ③ 총 3,500억불 규모 對美 금융패키지 조성⁴⁾, ④ 미국산 에너지 1,000억불 구매 약속⁵⁾, ⑤ 비관세장벽 완화⁶⁾ 등이 포함되어 있음. 정부는 이로써 한국

1) 4.2일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에 부과할 상호관세를 발표

○ 관세율이 교역규모 대비 무역적자 규모에 기반하여 산정됨에 따라 우리나라(25%)는 주요국(일본 24%, EU 20%) 대비 높은 관세율 책정

○ 이후 미국은 두 차례 상호관세를 연장, 8.1일까지 협상시한 설정

2) 통상교섭본부장이 양국간 제조업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를 통한 상호호혜적인 방안 마련을 미측에 제안

* 상무장관·USTR 대표 면담(6.23), USTR 대표 면담(6.27, 7.5), 상무장관 면담(7.7, 7.9)

○ 산업부 장관은 임명 즉시 방미하여 美 상무장관·무역대표부 대표 및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 협력 등을 바탕으로 협상

* 산업부장관, 통상교섭본부장 - 美 상무장관, USTR 대표 면담(7.24, 7.25, 7.27(2회), 총 4회)

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통상교섭본부장 - 美 상무장관, USTR 대표 면담(7.29, 7.30)

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통상교섭본부장 - 트럼프 대통령 면담(7.30)

3)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2025. 8. 6.)

4) 조선협력*(“MASGA 프로젝트”) 1,500억불, 이외 2,000억불은 반도체·의약품·이차전지·에너지·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에 사용

* 미국내 조선소 신설, 인력양성,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MRO 등

5) '24년 대미 에너지 수입액: 총 224억불 (원유 142, LNG 31, LPG 45, 석탄 6)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품목이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성과라고 평가함.

정부는 금번 협상은 新 보호무역질서에서의 적응을 의미하고, 타결 이후에도 고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압력이 상시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관리와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한·미 협상 타결 이후 합의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함.

동 결의안은 대한민국의 자유무역 체제를 보호하고, 글로벌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정책적 선언으로서, 공식적으로 국회의 정책적 우려와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다만, 9월 현재 시점에서는 한·미 협상의 큰 틀이 이미 타결된 상황으로, 결의안이 제안 당시 갖고 있던 시급성과 정책적 압박 효과는 상당 부분 약화되었으며, 제안 시점과 실제 협상 타결 시점 간의 시차로 인해 결의안의 영향력은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자유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결의안의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한미 관세 협상 및 후속조치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결의안 시기 및 내용을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6)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과채류 수입위생절차 관련 양국 협력 강화 및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수용* 약속

* 현재 제작사별 연 5만대인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을 철폐

○ 온라인플랫폼법 등 여타 비관세조치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들이 차별·불이익 받지 않도록 지속 협의 약속

아울러 미 관세조치 부과 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미 관세 조치 영향, 대응방안 등을 논의해 왔으며, 향후에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가 우리기업의 수출, 투자, 공급망 안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산업과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함.

문 의 처
02) 6788-5266

참고자료 1

美 관세 부과 현황

1. 상호관세 조정 행정명령 및 Factsheet(7.31.) 주요내용

- (상호관세율) 69개국(10% 3개국, 15% 40개국, 15%↑ 26개국) 대상
상호관세율 조정(별첨) / 그 외 국가에는 10% 기본관세만 부과
- (주요국 관세율) 韓 15%, 日 15%, EU 15%, 베트남 20%, 인도 25%, 대만 20%

美 백악관의 “각국과의 무역협약” 설명자료(7.31) 요약

- (EU) ▲'28년까지 美 에너지 7.5천억불 구매 ▲6천억불 對美 신규 투자
 - (日) ▲5.5천억불 對美투자 ▲日 시장 추가 개방(further open its own market)
 - (英) 수십억불에 해당하는 美 수출품에 대한 시장 접근성 확대
 - (기타) 인니, 필리핀, “한국”, 베트남 등과의 추가적인 무역협정은 美 산업 보호, 외국 시장 개방, 美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장려 기대
- ※ 상금 10개국(英, 日, EU, 인니, 베트남, 필리핀, 한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합의 체결

□ (적용) 8.7일부터 적용

- (예외) 캐나다·멕시코*(펜타닐 관세), 중국에는 미적용

* 캐나다 대상 펜타닐 관세는 8.1일부로 기존 25%에서 35%로 인상(USMCA 적용 품목은 제외)(7.31 행정명령) / 멕시코는 펜타닐 관세 90일 유예 확보(7.31.)

** 중국에는 8.11일 만료 예정이던 대중국 관세 유예조치(5.12일 행정명령)를 90일 추가 연장(~11.9일)

□ (환적) 불법 환적에는 (해당국에 부과된 상호관세 대신) 40% 관세 부과

※ 그 외 벌금, 벌칙, 수수료, 세금, 요금 등도 징수

2. 품목별 관세

- (미 상무부 BIS 232조 조사 중) 대상 품목 총 8개 / ①목재(3.10~) ②반도체 및 장비(4.1~) ③의약품(4.1~) ④중대형 트럭(4.22~) ⑤핵심광물 및 파생품(4.22~) ⑥상업용 항공기 및 엔진(5.1~) ⑦무인항공시스템(UAS) 및 부품과 구성품(7.1~) ⑧폴리실리콘 및 파생품(7.1~)

- (반도체) 트럼프 대통령은 8.6일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미국에 생산설비 건설을 약속했거나 생산설비 건설을 진행중인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 언급

- (의약품) 트럼프 대통령은 7.8일 200% 관세 부과 가능성 언급

- (관세 부과 중) 자동차·부품(25%), 철강·알루미늄(50%), 구리(50%)

참고자료 2

주요국 상호관세율 비교

국가명	조정 前	조정 後	국가명	조정 前	조정 後
아프가니스탄	10%	15%	말라위	17%	15%
알제리	30%	30%	말레이시아	25%	19%
앙골라	32%	15%	모리셔스	40%	15%
방글라데시	35%	20%	몰도바	25%	25%
볼리비아	10%	15%	모잠비크	16%	15%
보스니아	30%	30%	미얀마	40%	40%
보츠와나	37%	15%	나미비아	21%	15%
브라질*	10%	10%	나우루	30%	15%
브루나이	25%	25%	뉴질랜드	10%	15%
캄보디아	36%	19%	니카라과	18%	18%
카메룬	11%	15%	나이지리아	14%	15%
차드	13%	15%	북마케도니아	33%	15%
코스타리카	10%	15%	노르웨이	15%	15%
코트디부아르	21%	15%	파키스탄	29%	19%
콩고	11%	15%	파푸아뉴기니	10%	15%
에과도르	10%	15%	필리핀	20%	19%
적도기니	13%	15%	세르비아	35%	35%
EU	20%	15%	남아공	30%	30%
포클랜드섬	41%	10%	한국	25%	15%
피지	32%	15%	스리랑카	30%	20%
가나	10%	15%	스위스	31%	39%
가이아나	38%	15%	시리아	41%	41%
아이슬란드	10%	15%	대만	32%	20%
인도	25%	25%	태국	36%	19%
인도네시아	32%	19%	트리니다드	10%	15%
이라크	30%	35%	튀니지	25%	25%
이스라엘	17%	15%	터키	10%	15%
일본	25%	15%	우간다	15%	15%
요르단	20%	15%	영국	10%	10%
카자흐스탄	25%	25%	바누아투	22%	15%
라오스	40%	40%	베네수엘라	15%	15%
레소토	50%	15%	베트남	46%	20%
리비아	30%	30%	잠비아	17%	15%
리히텐슈타인	37%	15%	짐바브웨	18%	15%
마다가스카르	47%	15%			

* (브라질) 美 행정부는 별도 행정명령(7.30)을 통해 브라질 대상 정치적인 이유로 40% 추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상기 상호관세 10%와 함께 총 50% 관세 부과